

협약서

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(1단계)

서울특별시와 셀파이엔씨(주)는 「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(1단계)」을 수행함에 있어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” 제43조에 의한 협상을 이행하고, 첨부된 기술협약서 내용을 셀파이엔씨(주)가 이행하기로 합의하며, 본 협약서의 내용은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과업범위에 포함한다.

첨부 : 기술협약서 1부.

2018. 5. 28.

서울특별시 : 도로관리과장

박 문희



계약상대자 : 셀파이엔씨(주)

곽정하



기 술 협 약 서

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(1단계)

1. 협약내용

- 가. 본 협약서의 계약자는 서울특별시와 셀파이엔씨(주) (이하 ‘계약상대자’라 한다)로 한다.
- 나. 이 협약서를 통하여 ‘서울특별시’와 ‘계약상대자’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 상호 신뢰 및 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.
- 다. 「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(1단계)」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를 기본으로 하며, ‘서울특별시’의 제안요청서와 ‘계약상대자’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내용과 본 기술협약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.
- 라. ‘계약상대자’는 동공자료 DB구축 및 동공탐사·분석기술 등 기술발전을 위해 ‘서울특별시’에 적극 협조한다.

3. 협약의 효력

- 가. 이 협약의 효력은 「2018년 노면하부 공동탐사용역(1단계)」의 계약기간과 같다.
- 나.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‘서울특별시’와 ‘계약상대자’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을 보관 한다.

2018. 5. 28.

서울특별시 : 도로관리과장

박 문희



계약상대자 : 셀파이엔씨(주)

곽 정하

